

**제목 : 스승의 날 금품수수 및 촌지 근절을 위한 안내**

점점 푸른 녹음이 짙어지고 햇살이 눈부신 5월입니다. 항상 교육의 동반자로서 자녀 교육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학부모님께서 학교를 방문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행사와 관련하여 학부모회등 자생단체에서 회비를 모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의 달 5월, 학생은 스승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교사는 학생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깊이 확인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부모님의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학교는 불법찬조금 및 촌지를 받지도 걷지도 않습니다.”**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병과후교육활동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모금** 및 각출금품의 접수
- 조성 및 **운영계획을 확정하기 전 모금각출** 금품의 접수 사례
- 간부 학생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 학부모를 상대로 **각출금의 납부를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사례
  - 각출금을 일정액(최저액 등)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 사전에 납부 희망액 조사 또는 신청을 접수하는 사례
  - 가정통신문, 전화 등을 통하여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학교장 연명으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등
- **현행 법령상 발전기금 조성 대상이 아닌 각종 찬조금**을 학부모회, 학급위원회 등에서 임의로 접수하여 학교발전기금 회계에 편입하지 않은 사례
  -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 자율학습 교사 수고비, 회식비 등

2019. 5. 14.